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기획예산과-13139
등록일자	2015.8.26.
결재일자	2015.8.27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 직무대리	
송창근	조현석	김희주	김용운	전결 08/27 주윤중	
협조자	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	이창훈 김효길			

-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한 -

2015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보고



■ 심의기간 : 2015. 08. 24.(월) ~ 08. 25(화)

■ 지방보조금 심의

○ 보조금 신청 사업 교부전 심의 (4개 부서, 4개 사업)

■ 심의현황

○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○ 심의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	대상사업	예산액
노인복지과 외 3개 부서	노인의날 강남 어르신 대축제 외 3개 사업	675,160

강 남 구
(기 획 예 산 과)

2015년 제5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보고

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개정에 따라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보조금의 합리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(제17조, 제17조의2, 제32조의2~제32조의10)
- 지방재정법 시행령 (제37조의2~제37조의6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

II 개 요

- 심의기간** : 2015. 08. 24(월) ~ 08. 25(화)
- 심의방법** : 서면심의
- 주요내용**
 - 제5차 지방보조금 심의 회의 (4개부서 4개 사업)
- 심의위원회 심의 실시** : 총 15명
 - 당연직(3명) : 기획경제국장, 복지문화국장, 행정국장
 - 위촉직(12명) : 민간위원 위촉 운영

Ⅲ 심의 내용 및 결과

□ 제5차 심의대상

○ 제5차 사업비 교부 : 총 4개부서, 4개사업 (교부 예정액 : 총 675,160천원)

□ 심의 내용

○ 사업비 교부 내역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건수	보조사업명	교부예정액	의결사항
	계	4		675,160	675,160
1	노인복지과	1	노인의 날 강남 어르신 대축제	37,800	원안가결
2	도시계획과	1	간판개선 사업 추진(기금)	500,000	
3	건축과	1	주요상권 빛의거리 조성	125,000	
4	보건행정과	1	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	12,360	

□ 주요 심의 의견

연번	위원명	심의 의견사항(내용)	비고
1	***	빛의거리 조성사업은 소멸성으로 시설을 계속 쓸 수 없다면 재고하기 바람	부서시달
2	***	빛의거리 조성사업은 자부담액을 입금하고 이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바람	부서시달
3	***	노인의날 행사 기념품 구입비 (단가 : 5천원)로 실용적인 기념품 제작이 어려울 것을 판단됨	운영참조
4	***	간판개선 사업의 경우 지원 점포 선정 기준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기를 바람	부서시달
5	***	예산집행에 따른 낭비요인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	운영참조

연번	위원명	심의 의견사항(내용)	비 고
6	***	<p>1. 노인의 날 기념 축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대장 100부는 어디로 보내는 것인지,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우려됨(어르신들은 인터넷에 익숙치 못하므로, 우편물 초대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) <p>2. 빛의거리 조성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,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금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- 해당 사업의 지원 효과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며, 지원액중 40%가 설치비인데 이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성 있음 <p>3. 의료관광 참가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난 4월 심의시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바, 부산에서 진행되는 행사도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며, 당시 부스참가비와 금번 부스참가비의 비율이 50%에서 80%로 상향된 사유가 명확치 못해 심의 할 수 없음 	업무참고 및 부서시달

심의결과

- 보조금 예산 편성액 총 1,024,300천원 중 부서 조정을 거친 총 675,160천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(안)에 대한 편성을 의결함
→ 원안가결

※ 의결근거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(회의등)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IV

행정사항

□ 보조금 지원 사업부서

- 심사위원 심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보완하여 사업 추진
- 심의 원안 통과된 사업에 대해 최종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징구
- 사업비 교부후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관리
(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)
- 사업종료 후 정산 검사 실시 및 매년 성과평가 실시

- 붙임 1. 심의결과서 및 심의서 각1부.
2. 심의의결사항 1부. 끝.